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 박해철 · 송옥주 · 이수진

박선원 · 김영배 · 박희승

강선우 · 서영교 · 김태선

김정호 • 윤종군 • 김주영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 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 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④ 근로자의 통상임금이「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
<u><신 설></u>	음) ③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u><신 설></u>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④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 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
	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
	만,「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
	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